

이 보도자료는 2020. 1. 30.(목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

전문공보담당자 형사1부장 김락현
전화 031-8053-4308 / 팩스 031-8053-4655

보도자료
2020. 1. 30.(목)

제 목

사무장 동물병원 및 허위 친환경인증농가 수사 결과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(제11조 제1항)

▣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으로부터 사무장 동물병원 운영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결과,

- 사무장 동물병원 1곳을 추가 적발하여 수의사 2명, 동물병원 운영자 2명,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자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,
- 사무장 동물병원으로부터 수의사 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 등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여 친환경인증을 받은 경기도 육계 농장주 25명을 인지하여 불구속 기소하였음

▣ 합법을 가장하여 사무장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적발하고, 관행적으로 수의사 처방 없이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후 부정확한 방법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장주들을 일괄 단속한 사례임

1

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① 피고인

- A○○ (42세, A 동물병원 실운영자)
- B○○ (54세, 수의사)
- C○○ (55세, 동물용의약품판매업자)
- D○○ (47세, D 동물병원 실운영자)
- E○○ (37세, 수의사)
- F○○ (67세, 육계축산업) 외 24명 농장주

② 공소사실 요지

- A, B, C는 수의사 B 명의로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동물병원은 수의사가 아닌 A가 운영하며 C로부터 동물용의약품을 공급받기로 공모한 후, '15. 1.경부터 '19. 2.경까지 300여개 육계 농가에 48억 원 상당의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판매[약사법위반 등]
- D와 E는 수의사 E 명의로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동물병원은 수의사가 아닌 D가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, '16. 4.경부터 '19. 11.경까지 400여개 육계 농가에 70억 원 상당의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[약사법위반 등]
- 농장주 F 등 육계 농장주 25명은 A와 공모하여, 수의사의 진료 및 처방을 받지 않고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후 인증기관에 수의사 B 명의의 허위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여 무항생제 축산물 등의 친환경 인증을 받음[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·지원에관한법률위반 등]

2

수사경과

- '18. 12. ~ '19. 9. 경기도 특사경 내사착수, A 동물병원 관련수사
- '19. 9. 검찰 송치
- '19. 9. ~ 11. 약품판매업체 및 친환경인증기관 수사, D 동물병원 관련 범행 인지
- '19. 11. ~ '20. 1. A 동물병원으로부터 약품을 구매한 친환경인증농장주 수사 및 25명 인지
- '20. 1. 30. 불구속 기소

3

피고인별 처분내용

순번	피고인 및 신분	공소사실 요지 (죄명)	처리 결과
1	A (동물병원 운영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의사 B 명의로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동물병원은 A가 운영하며 C로부터 동물용의약품을 공급받아 농가에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, '14. 3.경 B 명의로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A가 이를 운영하면서 '15. 1.경부터 '19. 2.경까지 300여개 육계 농가에 48억 원 상당의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함[약사법위반] - 육계 농장주들과 공모하여, 수의사의 진료 및 처방 없이 수의사 B 명의의 허위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여 농장주들에게 교부하고, 농장주들이 이를 인증기관에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무항생제축산물 등 친환경 인증을 받게 함[친환경농어업법위반, 업무방해] 	불구속 기소
2	B (수의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의사 B 명의로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동물병원은 A가 운영하며 C로부터 동물용의약품을 공급받아 농가에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, '14. 3.경 B 명의로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A가 이를 운영하면서 '15. 1.경부터 '19. 2.경까지 300여개 육계 농가에 48억 원 상당의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함[약사법위반, 수의사법위반] 	불구속 기소

순 번	피고인 및 신분	공소사실 요지 (죄명)	처리 결과
3	C (동물용 의약품 판매업자)	- 수의사 B 명의로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동물병원은 A가 운영하며 C로부터 동물용의약품을 공급받아 농가에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, '14. 3.경 B 명의로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A가 이를 운영하면서 '15. 1.경부터 '19. 2.경까지 300여개 육계 농가에 48억 원 상당의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함 [약사법위반]	불구속 기소
4	D (동물병원 운영자)	- 수의사 E와 공모하여 수의사 E 명의로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D가 위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'16. 4.경부터 '19. 11.경까지 400여개 육계 농가에 70억 원 상당의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함 [약사법위반]	불구속 기소
5	E (수의사)	- D와 공모하여 수의사 E 명의로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D가 위 동물 병원을 운영하면서 '16. 4.경부터 '19. 11.경까지 400여개 육계 농가에 70억 원 상당의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함 [약사법위반, 수의사법위반]	불구속 기소
6	F (육계 농장주) 외 24명	- 농장주 F 등 육계 농장주 25명은 동물병원 운영자 A와 공모하여, 수의사가 진료 및 처방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물용의약품을 구매하여 사용한 후 A로부터 수의사 B 명의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교부받아 이를 인증기관에 제출하거나,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동물용의약품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항생제축산물 등의 친환경 인증을 받음 [친환경농어업법위반, 업무방해]	불구속 기소